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##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종전의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으로 전부개정(2022. 1. 6. 시행)되는 등 관계법령 개정예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제명의 변경
  - (현행) 「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→
  - (개정) 「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2조 및 제3조)
-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지원(안 제4조 및 제5조)
-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(안 제6조)

-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정(안 제8조)
- 환경교육 실시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(안 제9조)

## 5. 검토내용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여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국회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,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등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우수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을 2021. 1. 5. 법률 제17854호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하였고,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나 2022. 1. 6. 시행됨.
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시·도 환경교육계획 수립, 학교환경교육 지원, 사회환경교육 활성화,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등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.

-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시행(안 제2조 및 제3조), 학교환경교육의 지원(안 제4조),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기관의 지정(안 제5조 및 제6조),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(안 제8조),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(안 제9조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내용의 정당성과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고,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다만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,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22. 6. 10. 법률 제18916호로 다시 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,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입법예고('22. 9. 23.~'22. 10. 1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2022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남 등 5곳에서 전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조례를 시행 중임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례안은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시행, 학교환경교육의 지원,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기관의 지정,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,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조문의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여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서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,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도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관리 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우수한 환경교육을 실시·지원 및 현황 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,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요구됨.